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6년 3월 4일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동 현 

목 차

1. 지배구조 일반	1
2. 이사회	4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6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24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8
6. 감사위원회	29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43
8. 리스크관리위원회	50
9. 경영관리협의회	55
10. 리스크관리협의회	55
11.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56
12. 주주총회	63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66
1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66
<첨부> 관련규정	67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은캐피탈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 1/2 이상을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기준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은캐피탈 홈페이지 주소 : www.kdbc.co.kr)

산은캐피탈은 관련 법규 등에 기반을 두어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배구조 원칙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15년 12월 31일 기준)



위원회	구성
이사회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리스크관리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집행임원 2명

* 기타비상무이사 2016년 2월 3일자로 사임하여 공시일 현재 공석임

(2) 지배구조의 특징

산은캐피탈은 2015년말 기준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현재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준비 중입니다.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2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1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의장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	6명 (사외이사 3명)	구동현(상임)	정관§38, 이사회규정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	6명 (사외이사 3명)	구동현(상임)	정관§41조의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4명 (사외이사 3명)	송정환(사외)	정관§41조4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리스크 관리·통제	4명 (사외이사 1명)	구동현(상임)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세칙
보상위원회	성과보상체계 운영	(설치 예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규정
- 첨부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4.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규정 제4조)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총 11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33건의 결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고, 7건의 안건을 보고 받고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 §4).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경영목표·전략은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자회사관리단의 협의를 거쳐 2015년 12월에 개최된 2015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2016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 2016년 경영목표·전략의 주요내용

- 승인대상 : 당기순이익, 자산성장률, 건전성비율
- 경영목표
 - 동업계 과거 2개년 평균 ROE 이상 유지
 - 자산구성의 질적 고도화
 - 동업계 평균 수준의 자산건전성 유지

- 중점추진과제
 -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양적확대에서 내실경영으로 전환
 - 금융환경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선제적 리스크관리

(나) 정관변경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안건상정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상법§433, 정관§39, 이사회규정§4) 산은캐피탈은 2015년도 중 정관을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4).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은 2016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2015년 12월 개최된 2015년도 제 11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 인건비 : 신규채용, 임금인상, 승진 등 반영
- 경 비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출연, IFRS 관리 외부용역 등 비경상예산 증액
- 자본예산 : IT망분리 및 관리회계시스템 개발 등

2015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6년 2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2월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사전보고했으며,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사회(2016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별도기준 893억원, 연결기준 996억원)
- 총자산 (별도기준 41,761억원, 연결기준 50,184억원)
- 배당 (보통주 액면 배당률 10%, 311억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조직 신설·폐지 등 조직의 중대변경에 대해서 결정합니다(이사회규정 §4).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개최된 2015년도 11차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리테일금융2실 및 여신감리단 신설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영업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관리자산 조정 및 업무량 분산과 여신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신감리업무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직개편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의 수립 및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6년 8월 1일 이후 시행될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산은캐피탈의 최적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등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예정입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해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의 기준에 맞춰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에서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임원과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은캐피탈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5년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산은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시, 점검, 조사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 등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합니다.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이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규정 등 관련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승인을 통하여 회사의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중요한 모니터링 지표를 승인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반영하고 상시적으로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연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회사의 사업계획 달성에 따른 리스크 부담 한도를 관리하여 자본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향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산은캐피탈의 이사회는 총원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정관§31). 최소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원수가 3명 미만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대원수를 10명 이내로 규정한 것은, 이사원수가 11명 이상인 이상인 경우 이사간 의견 수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6명의 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기타비상무이사 이외의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2015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사내이사 각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임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인 이사)의 경우 3년이고, 사외이사의 경우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정관§33).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산은캐피탈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소극적 자격요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구성원들로 구성하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문분야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내규화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구동현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15년 5월 선임되었습니다. (임기 3년)

(2) 구성원

(가) 이사회 구성원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구분	직위	임기	재임기간	담당위원회	비고
구동현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리스크관리 위원장	2015.05.14 ~2018.05.13	8개월	이사회, 사추위, 리스크관리위원회	
김영기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리스크관리 위원장	2012.05.02 ~2015.05.13	36개월	이사회, 사추위, 리스크관리위원회	임기만료 퇴임 (2015.05.13)
김형섭	상임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2015.04.30 ~2018.04.29	8개월	이사회, 감사위, 사추위	
이당영	상임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2012.03.30 ~2015.03.29	36개월	이사회, 감사위, 사추위	임기만료 퇴임 (2015.03.29)
최정상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2.03.30 ~2015.04.29	36개월	이사회, 감사위, 사추위	임기만료 퇴임 (2015.04.29)
전영삼	비상임	기타비상무 이사	2015.03.27 ~2016.02.03	9개월	이사회, 사추위	사임 (2016.02.03)
송정환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4.06.26 ~2016.06.25	18개월	감사위, 사추위, 리스크관리위원회	

성명	구분	직위	임기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비고
손재필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4.12.10 ~2016.12.09	13개월	감사위, 사추위	
김종두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5.04.30 ~2017.04.29	8개월	감사위, 사추위	

(나) 이사회 구성원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구동현	2009. 02 한국산업은행 M&A실장 2010. 01 한국산업은행 KDB컨설팅장 2011. 02 산은금융지주 기획관리실장 2012. 01 산은금융지주 기획·관리담당 부사장(COO & CAO) 2014. 07 대우증권 사장 직무대행
김형섭	2002. 12 신한은행 전주지점장 2004. 12 신한은행 반포남기업지점장 2006. 04 신한은행 양재남기업, 양재동기업지점장 2008. 09 신한은행 서초남기업지점장
전영삼 *사임 (2016.2.3)	2012. 01 한국산업은행 BRS사업실장 2013. 01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부장 2014. 01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장 2014. 12 한국산업은행 기획조정부장
송정환	2008. 02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1실장 2009. 02 한국산업은행 여신심사2부장 2010. 01 한국산업은행 인사부 전임교수단장
손재필	2005. 03 경기도 체육회 이사 2010. 03 現)제이제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2012. 03 강남대학교 대우교수
김종두	1985. 03 現)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09. 03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2014. 01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2014. 06 現)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공익위원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재적이사들의 높은 참석률(이사 평균참석률 99%)로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제1~10회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100%가 참석하였으며, 제11회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인의 불참 하에 개최되었으나 의결 성원이 충족되어 심의·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 개최시 해당 부서장이 안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참석이사의 질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본부장이 배석하여 안전 취지 및 의결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충실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33개 의결 안전을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 2015년 3월 6일(금) 오후3시

[안전 통지일 : 2015년 2월 27일(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영기	이당영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1. 이사 성명	김영기	이당영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1호안전 :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나. 2호안전 :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다. 3호안전 : 2014년 감사결과 등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라. 4호안전: 2014년 리스크 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 제44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전 : 제44기(2014.1.1~2014.12.31)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다. 3호안건 : 제44기(2014.1.1~2014.12.31)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 2015년 이사보수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 2015년 내부자본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5년도 제2차 이사회 : 2015년 3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3월 11일(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기	이당영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행사 기준일 설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 위너스제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5년도 제3차 이사회 :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2015년 3월 20일(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기	이당영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비등기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 임시주주총회 의안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5년도 제4차 이사회 : 2015년 4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4월 22일(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기	전영삼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 2015년 제1분기 회계결산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5년도 제5차 이사회 :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안건 통지일 : 2015년 5월 7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동현	김형섭	전영삼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대표이사 사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15년도 제6차 이사회 : 2015년 5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5월 21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동현	김형섭	전영삼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한국산업은행과의 파생상품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가칭)KDB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15년도 제7차 이사회 : 2015년 6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6월 8일(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동현	김형섭	전영삼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2014년 상표 등 사용료 지급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15년도 제8차 이사회 : 2015년 7월 13일(월)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7월 6일(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동현	김형섭	전영삼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가칭)대우글로벌 K-Growth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2015년도 제9차 이사회 :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8월 20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동현	김형섭	전영삼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 2015년 제2분기 회계결산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머큐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2015년도 제10차 이사회 :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11월 19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동현	김형섭	전영삼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 2015년 제3분기 회계결산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한국산업은행과의 한도차입약정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 한국산업은행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2015년도 제11차 이사회 : 2015년 12월 29일(금) 오후 4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12월 28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동현	김형섭	전영삼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2016년 사채발행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 직제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 한국산업은행과의 상표 등 사용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 한국산업은행과의 그룹웨어(TOSS)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 리스선박의 한국산업은행 앞 근저당권 제공 연장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사. 7호안건 : 비등기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아. 8호안건 : 준법감시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자. 9호안건 : 임원 기본연봉 조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차. 10호안건 : 직원 기본연봉 조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카. 11호안건 : 직원 단체성 과급 지급률 조정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송정환 사외이사 불참사유 : 개인일정으로 인한 불참

라. 평가

(1) 이사회 평가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사회 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평가는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장치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평가항목으로는 이사회 소집절차 준수,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실질성 등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산은캐피탈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운영규정 제 3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산은캐피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지며,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로써 사외이사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청할 책임과 역할을 가집니다.

산은캐피탈은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은캐피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오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투철한 책임의식 등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주주, 이해관계자 등 회사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다. 구성

산은캐피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4제2항에 의거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9일 기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

성명	구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비고
김영기	상임	위원장, 대표이사	2012.05.02~ 2015.05.13	서울대 경영학과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기만료 퇴임 (2015.05.13)

성명	구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비고
전영삼	비상임	위원, 기타비상무이사	2015.03.27~ 2016.02.03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現 한국산업은행 기획조정부장	사임 (2016.02.03)
최정상	사외	위원, 사외이사	2012.03.30~ 15.04.29	서울대 경영학과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임기만료 퇴임 (2015.04.29)
송정환	사외	위원, 사외이사	2014.06.26~ 2016.06.25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한국산업은행 여신심사2부장	-
손재필	사외	위원, 사외이사	2014.12.10~ 2016.12.09	한양대 일반행정대학원 現 제이제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산은캐피탈은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 등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2015년 중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1인(최정상 이사)에 대한 후임 선출을 위하여 2015년 4월 29일에 한차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종두 후보자를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투철한 책임의식 등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5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년 4월 29일(수) 오후 2시 45분
[안전통지일 2015년 4월 28일(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기	전영삼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심의)안전						
가. 1호안전 : 사외이사 후보 추천(김종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2012년 3월 29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최정상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2015년 4월 29일 개최되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김종두 후보자를 경력 및 경험과 적극적 자격요건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산은캐피탈 사외이사에 적합하다고 판명되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추천된 김종두 후보는 2015년 4월 30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 성명 : 김종두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5년

② 출신학교

- 경북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1985년 3월 ~ 1991년 9월 前 대구가톨릭대학교 상업교육과 조교수
 - 1991년 10월 ~ 1996년 9월 前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1996년 10월 ~ 현재 現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09년 9월 ~ 2011년 8월 前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前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 2014년 6월 ~ 현재 現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공익위원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2015년 1월 ~ 2016년 1월 現 DGB생명보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5년 4월 30일 ~ 현재
- 회사명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주요 실적(2015년) : 파생상품거래 승인, 상표 등 사용료 지급계약 체결 승인, 사모 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 한도차입약정 체결 승인,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 양도 승인 등 다수
- 이사회 참석횟수 : 선임 후 총7회 중 7회 참석, 참석률 100% (2015년)
-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선임 후 개최한 내역 없음
 - 감사위원회 : 선임 후 총1회 중 1회 참석, 참석률 100% (2015년)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 한국산업은행(최대주주)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후보제안자 또는 동일 기업집단내 회사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김종두 사외이사 후보자는 30년 이상 대구가톨릭대학교 상경계열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상대학 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산은캐피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종두 사외이사 후보자는 주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기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제4항(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산은캐피탈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함과 아울러,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경제·경영·회계·법률 등 관련분야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한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동 후보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금융회가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문성

김종두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투자론 및 금융기관

경영론 등을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30여년의 경영학과 교수 재직 경험과 아울러 대구가톨릭 대학교 경상대학장 및 동대학 경영대학원장,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감안할 때 산은캐피탈의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김종두 후보자는 신규 선임이사이며, 산은캐피탈과 거래관계가 없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종두 후보자는 산은캐피탈의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김종두 후보자의 30여 년의 교수 재직 경험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과 정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 차별시정공익위원 등으로서의 경력을 감안할 때, 동 후보자는 윤리성과 책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종두 후보자는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㉖ 충실성

김종두 후보자는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서 재직 중이기는 하나, 산은캐피탈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및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산은캐피탈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산은캐피탈은 현재 사외이사 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여 평가결과가 없습니다.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한 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산은캐피탈은 2015년도 중 사외이사를 재선임한 내역이 없으며, 현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은캐피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이사회 등 참여도, 내·외부평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4월 29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5명 중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제45기(2015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및 연임하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산은캐피탈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만 동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산은캐피탈은 2015년도 중 사외이사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후보군 현황

산은캐피탈은 2015년도 중 사외이사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산은캐피탈은 2015년도 중 사외이사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산은캐피탈은 2015년도 중 사외이사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산은캐피탈은 현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산은캐피탈은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산은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도덕성,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를 선임해왔습니다.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내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 비상계획

산은캐피탈은 정관 제35조에 의거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임원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차 이사회(2010년 5월 11일 개최)에서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임원서열을 다음과 같이 정한 바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 사장 직무 대행

부사장, 상무의 순으로 합니다. 단, 동일 직위자가 다수인 경우, 동 직위 최초 선임일자가 앞서는 자의 순서로 하며, 최초 선임일자도 같을 경우, 연장자의 순으로 합니다.

(나) 주주총회 의장 직무 대행

부사장, 상무의 순으로 합니다. 단, 동일 직위자가 다수인 경우, 동 직위 최초 선임일자가 앞서는 자의 순서로 하며, 최초 선임일자도 같을 경우, 연장자의 순으로 합니다.

(다)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으로 합니다. 다만, 동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

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한 등기이사 중 최초 선임일자가 앞서는 자의 순서로 하며, 최초 선임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서로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임기 만료로 인한 경영승계 절차 진행>

산은캐피탈은 대표이사 김영기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년 5차 이사회(2015년 5월 14일 개최)에서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추천으로 구동현 후보자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임기만료로 인한 최고경영자 선임>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5.03.19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제2차 이사회
2015.04.30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사내이사 선정 지연을 원인으로 임시주주총회 속행 개최를 제안하고 참석주주 전원이 찬성	임시주주총회
2015.05.14	신임 사내이사 선임(구동현)	임시주주총회(계속회)
2015.05.14	대표이사 사장 선임(구동현)	제5차 이사회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산은캐피탈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내규에 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내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은캐피탈 내규와는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함과 아울러,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목표 및 비전을 공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경제·경영·회계·법률 등 관련분야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한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가

산은캐피탈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추천된 구동현 후보자는 1982년에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한국산업은행 M&A실장, 한국산업은행 컨설팅실장, 산은금융지주 기획관리실장, 산은금융지주 기획·관리담당 부사장, 대우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을 역임해오며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은캐피탈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지내며, 산은캐피탈 업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동현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은캐피탈 이사회는 구동현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동 후보자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산은캐피탈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선정과 관련된 지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산은캐피탈은 현재 대주주의 추천을 받아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후보군 현황

산은캐피탈은 2015년도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산은캐피탈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규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금

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내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산은캐피탈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과 관련된 내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내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은캐피탈의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기획실이며, 동 부서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종합기획, 영업기획통할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기획실
- 직원수 : 총6명
- 담당자 : 실장 1명, 담당직원 5명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통제체도의 주요 기구로서,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법 제415조의2 및 정관 제41조의2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4, §5)

(권 한)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확인서, 의견서, 답변서 등의 제출요구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회사 거래처에 대한 자료 징구
6. 자회사(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감사 업무에 수반되는 권한
7.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책 무)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상기 각호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명문화하였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2/3이상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효율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규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회 및 이사의 업무집행 감독

① 주주총회 제출의안에 대한 의결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해당 의안 및 서류에 관한 법령 및 정관 위반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상법 §413, 감사위원회운영규정 §19)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5년 3월 26일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인 제44기 재무제표 승인,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 등 총 3건의 부의안건 전부에 대해 심의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심의된 대로 상근감사위원에게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술토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사내 이사 선임, 상근감사위원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등 총3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 바 있습니다.

②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상법 §412),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402)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9조 및 정관 제41조의5에 의거하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치청구,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임시이사회 소집청구를 의결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및 내외부 감사 조치사항 확인

①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의 감사계획은 2015년 2월 4일 개최된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수립된 구체적 감사계획은 정기감사 4회, 결산감사 1회,

부채감사 1회, 상각감사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1회, 자금세탁방지업무감사 1회, 예금담보 취득관련 감사 1회, 자점감사 4회, 일상감사 수회입니다.

② 내부감사의 집행 및 조치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는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상근감사위원이 주관하고(감사위원회직무규정 §3),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인 검사실의 검사인이 수행을 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실제 감사를 집행하는 상근감사위원 역시 그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감사위원회직무규정 §7)

내부감사의 구분은 기능별로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로 구분하며, 방법별로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자점감사로 구분합니다.(감사위원회 직무규정 §4)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집행을 위임받은 상근감사위원은 2015년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히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주의 11명, 시정 1건, 통보 26건, 현지조치 3건 등 총 41건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모두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3)

③ 외부감사 조치 확인

산은캐피탈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3)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2015년 10월 13일에서 23일까지 실시한 산은캐피탈에 대한 부문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관부서로부터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및 재무제표 등

①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4, 감사위원회운영규정 §3) 이에 근거해 2015년 3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그룹 회계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 및 일정의 적시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주주(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인이 자회사 감사인과 다를 경우 자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감사절차가 요구되는 등의 장단점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산업은행 계열사가 외부감사인을 공동 선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해임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19)

이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표시 여부 및 중요 위반사항 확인에 대한 소홀여부,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의거 감사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상의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기재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5년 3월 19일 3차 감사위원회에서 제44기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승인 하였습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의2 제4항, 내부회계관리규정 §11)

이에 따라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3월 6일 제 2차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라) 내부통제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내부통제규정 §19)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직무규정 §17)

1. 실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2. 사업본부별 영업계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3.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실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구조상 내부건제시스템의 적정성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5년 3월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 및 내부통제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평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운영규정 §22)

1. 위원회가 정한 내부감사계획의 세부계획변경
2. 내부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자회사의 조사
4. 제4조 각호의 권한
5. 감봉이하에 해당하는 징계 및 개인별 일천만원 이하의 변상사항(내부 감사 결과)
6. 일상감사
7.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
8.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
9. 내부·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및 확인
10. 감사관련 대외보고 및 검사실에 대한 지휘·감독
11.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12.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은 2015년중 총 7차례에 걸친 감사위원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가) 구성원칙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중 2/3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상법 §415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5, 정관 §41조의4)

이에 따라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는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명의 상근감사위원과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산은캐피탈이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아래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된 후에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①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5, 동법 시행령 제19조의9(감사위원회 재무전문가 요건)

다)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9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위원 중 1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

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적극적 요건

산은캐피탈은 아래와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1.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감사위원으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원장에 관한 것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1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라) 임기 및 구성원

① 임기

산은캐피탈의 감사위원의 임기는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를 따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총 재임기간은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위원선임일	임기 만료일
송정환	사외	감사위원장	2014. 06. 26	2016. 06. 25
손재필	사외	감사위원	2014. 12. 10	2016. 12. 09
김종두	사외	감사위원	2015. 04. 30	2017. 04. 29
김형섭	상임	상근감사위원	2015. 04. 30	2018. 04. 29

(2)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산은캐피탈은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가 없습니다.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결의사항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2. 회계 관련 감사보고서(상법에 규정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2. 정직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및 중대한 변상사항(내부 감사 결과)
3. 감사실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승인
5. 내부·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연 1회)

④ 기타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심의사항

①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4.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5.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6.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7.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8.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9. 외부감독기관 또는 지주회사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
11.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② 기타

1.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5. 1. 29(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이당영	
1. 위원 성명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이당영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감사위원장 선임의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2015년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5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5년 3월 6일(금)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3월 3일(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이당영	
1. 위원 성명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이당영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 2014년 감사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5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5년 3월 19일(목)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2015년 3월 16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이당영	
1. 위원 성명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이당영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가. 1호안건 :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제44기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5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3월 20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이당영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위원회 소집권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5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15년 4월 2일(목)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3월 30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 상근감사위원의 권한 위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15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15년 4월 29일(수) 오후 3시

[안전 통지일 : 2015년 4월 24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1. 위원 성명	최정상	송정환	손재필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 임시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견진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전 : 상근감사위원 권한 위임건에 대한 보고 및 추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15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안전 통지일 : 2015년 5월 11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김형섭	
1. 위원 성명	송정환	손재필	김종두	김형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 감사위원장의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전 : 상근감사위원 권한 위임건에 대한 보고 및 추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감사보조조직 등

산은캐피탈은 감사위원회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실을 두고 있으며(감사위원회운영규정 §12),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실제 감사를 실시하는 검사실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직무규정 §7)

검사실은 현재 검사실장을 비롯한 5명의 감사담당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근감사위원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외부감사 지원과 같은 기획총괄 업무와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감사수행결과를 보고하는 감사업무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검사실
- 직원수 : 총5명
- 담당자 : 실장 1명, 담당직원 4명

2015년중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한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5. 1. 20	상근감사위원	2014년 4/4분기 자점감사 결과 보고
2015. 1. 20	상근감사위원	자동차 부문감사 결과 보고
2015. 1. 28	상근감사위원	정기감사(IT지원실)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현황 중간보고
2015. 1. 29	상근감사위원	2015년 제1차 감사위원회 소집
2015. 1. 30	상근감사위원	특별감사(금융대출 주선의향서 발급관련) 조치요구 사항 정리완료 보고
2015. 2. 5	상근감사위원	상각(부채)감사 결과보고
2015. 2. 25	상근감사위원	예금담보 취득관련 감사 결과보고
2015. 2. 26	상근감사위원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2015. 2. 27	상근감사위원	예금담보 취득관련 감사 조치요구 정리완료 보고
2015. 2. 27	상근감사위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결과보고
2015. 3. 2	상근감사위원	자동차 부문감사 조치요구 정리완료 보고
2015. 3. 2	상근감사위원	2015년 제2차 감사위원회 소집
2015. 3. 16	상근감사위원	제44기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2015. 3. 16	상근감사위원	2015년 제3차 감사위원회 소집
2015. 3. 20	상근감사위원	2015년 제4차 감사위원회 소집
2015. 3. 30	감사위원장*	2015년 제5차 감사위원회 소집
2015. 4. 24	감사위원장*	2015년 제6차 감사위원회 소집
2015. 5. 4	상근감사위원	2015년 1/4분기 자점감사 결과 보고
2015. 5. 11	상근감사위원	2015년 제7차 감사위원회 소집
2015. 5. 29	상근감사위원	기업금융2실 정기감사 결과 보고
2015. 6. 15	상근감사위원	기업금융2실 정기감사 결과 조치완료 보고
2015. 7. 9	상근감사위원	부산지점 정기감사 결과 보고
2015. 7. 23	상근감사위원	2015년 2/4분기 자점감사 결과 보고
2015. 8. 27	상근감사위원	특별감사(민원관련) 결과 및 조치완료 보고
2015. 9. 1	상근감사위원	벤처금융실 정기감사 결과 보고
2015. 10. 8	상근감사위원	벤처금융실 정기감사 결과 조치완료 보고
2015. 10.20	상근감사위원	2015년 3.4분기 자점감사 결과 보고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5. 12. 1	상근감사위원	산업은행의 산은캐피탈 부문감사 결과 보고
2015. 12. 3	상근감사위원	리테일금융실 정기감사 결과 보고
2015. 12.24	상근감사위원	상각.부채 감사 보고
2015. 12.31	상근감사위원	산업은행 부문감사 지적사항 정리현황 보고

* 2015년 제5, 6차 감사위원회 소집시엔 상근감사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감사위원회 소집을 감사위원장이 하였습니다.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산은캐피탈은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을 반영한 보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에 대해 상기 목적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산은캐피탈은 보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을 반영한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산은캐피탈은 현재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을 반영한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산은캐피탈은 현재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산은캐피탈은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을 반영한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산은캐피탈은 2015년 12월 29일자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직원단체성과급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월급여의 0% ~ 150%	월급여의 0% ~ 170%

(2)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산은캐피탈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실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인(보조조직 : 준법지원팀)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산은캐피탈의 리스크관리실은 7명, 준법감시인·준법지원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실의 경우 해당 업무 평균근속 연수는 3.2년, 준법감시인·준법지원팀의 경우 1.0년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인원수	비고
리스크관리실	7	
준법감시인·준법지원팀	5	준법감시인 1, 준법지원팀 4

(3)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산은캐피탈의 리스크관리실 및 준법감시인·준법지원팀의 직원은 고유직무에 대한 업무달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서의 경우 종합리스크관리, 자산건전성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관리,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업무 수행결과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고 있으며,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팀의 경우 내부통제체도의 수립 및 운영,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 법규준수 검토,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업무 수행결과를 통해 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산은캐피탈은 2015년에 임직원이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산은캐피탈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 및 조직 성과와 연계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산은캐피탈은 일반직원에게 대하여 직책 및 성과와 연계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성 수당항목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산은캐피탈은 보상체계 설계시 고정급과 변동급 보상을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상규모를 경영성과와 연동함으로써 회사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보상규모가 통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산은캐피탈은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 고유지표 등을 계량 평가지표로 하고 업무개선실적, 경영평가 등을 비계량 평가지표로 하여 성과측정을 하고 있으며, 지원부문에 대해서는 계획사업의 적정성, 추진실적, 내부고객 만족도, 업무개선실적, 경영평가 등을 평가지표로 성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 성장성, 시장성, 생산성, 고유지표 등의 계량항목과 업무평가, 경영영평가의 비계량항목을 평가지표로 단기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익성, 성장성, 시장성을 평가지표로 장기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은캐피탈은 이와 같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산은캐피탈은 성과급 지급을 장기경영성과와 연동하기 위해 경영진 중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단기성과급 40%, 장기성과급 60%의 비율로 분할하여 단기성과급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의 익년도에 일시에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성과급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의 익년도부터 3년에 걸쳐 18%, 18%, 24%의 비율로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의 익년도에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산은캐피탈은 금융공기업인 한국산업은행이 발행주식의 99.92%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신주 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비율이 0.08%에 불과하여 유통시장을 통한 주식매입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의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산은캐피탈은 현재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상위원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특정직원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고정 보상액	변동보상액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4년)	경영진	9	9.9	10	3.5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10	11.6	평가진행중 (평가 확정 후 공시예정)	

* 현재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변동보상 대상 특정직원이 미확정 되어 있는 바, 특정직원을 제외하고 경영진에 대해서만 기재(이하 동일)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변동보상액	변동보상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14년)	경영진	10	10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평가진행중 (평가 확정 후 공시예정)				

* 변동보상액 10억원 중 6.5억원 기지급, 잔여 3.5억원 이연지급 예정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이연보상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4년)	경영진	6.9	1.0	5.9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평가진행중 (평가 확정 후 공시예정)		

* 2014년도 지급확정액은 2013년도 1차 이연보상액임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이연보상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4년)	경영진	6.9	3.5	3.4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평가진행중 (평가 확정 후 공시예정)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	주가변동 반영	성과평가 등 반영	기타 환수금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	-	-	-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	-	-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	-	-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	-	-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4년)	183.6	666	27.6%	215	0.85
당해년도 (2015년)	211.1	1,229	17.2%	251	0.84

* 중도퇴직 임직원의 보수총액 및 인원수 포함

8.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산은캐피탈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기타리스크의 관리와 전체 리스크관리를 통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리스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용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산은캐피탈의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각종 리스크관리지표에 대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단계별 비상대응조직을 구성하여 각 단계별 세부 대응방안을 선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연간리스크한도를 세부 리스크유형별로 배분하여 산은캐피탈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 부분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외환포지션한도를 설정하여 경제환경의 변동성에 따른 환율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사회 승인사항인 연간리스크한도(내부자본한도)를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연간리스크한도(내부자본한도)를 신용, 금리, 운영, 시장리스크 등의 세부유형별로 배분하여 관리하였습니다.(2015.3.6 2015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또한, 2015년 운용할 종합외환포지션한도를 관련법규 한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은캐피탈의 적극적인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설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2015.2.4 2015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및 여신편중위험 방지를 위하여 여신

건별, 거래처별, 산업별 등 다각적인 여신한도를 운용하고, 산은캐피탈은 동 여신한도 이내에서 여신을 취급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동 한도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적정 여신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기민감산업인 해운 및 부동산관련여신 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 PF여신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동 여신한도를 개별차주한도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용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2015.4.29 2015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또한, 감독법규의 외국환위험관리 예시기준을 준용하고, 산은캐피탈의 적극적인 외환관련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종합포지션 한도 축소, 국가별한도 예외사항 삭제, 거액외화여신한도 축소 등으로 강화된 외환위험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2015.4.29 2015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외국환리스크관리세칙 개정)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독립적인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여신한도 축소 및 한도운용 합리적 개선을 위한 리스크관리기준 개정(2015.4.29 2015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외국환위험관리 관리 강화를 위한 외국환리스크관리세칙 개정(2015.4.29 2015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외국환리스크관리세칙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리스크관리 현황보고를 통하여 산은캐피탈의 리스크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사항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산은캐피탈의 위험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시 비상대응조직의 자동운영으로 즉각적인 위기대응을 실행하고 실행상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무·회계전문가인 1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 외 부사장, 기획관리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하여 기획관리본부장 및 리스크관리본부장 겸임에 따라 총 4명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중 위원장인 김영기 대표이사와 위원인 김성태 부사장이 임기만료에 따라 사임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구동현 대표이사(위원장)와 최윤석 부사장(위원)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구동현	상임	위원장(대표이사)	2015. 05. 14	2018. 05. 13
김영기	상임	(구)위원장(대표이사)	2012. 05. 02	2015. 05. 13
최윤석	상임	위원(부사장)	2015. 03. 30	2017. 03. 29
김성태	상임	(구)위원(부사장)	2013. 01. 31	2015. 03. 29
송정환	사외	위원(사외이사)	2014. 06. 26	2016. 06. 25
윤봉준	상임	위원(본부장)	2015. 01. 01	2016. 12. 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5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8건이었으며 결의안건은 4건, 보고안건은 4건입니다. 결의안건은 총 4건 중 4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5년 1월 30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기	송정환	김성태	윤봉준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1호안전 : 2014년 12월말 기준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 2015년 외환포지션 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5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년 3월 6일(금) 오후 2시
 [안전 통지일 : 2015년 3월 3일(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기	송정환	김성태	윤봉준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 2015년 내부자 본한도설정(안) 심의 및 리스크유형별 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5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년 4월 29일(수) 오후 2시
 [안전 통지일 : 2015년 4월 24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영기	송정환	최윤석	윤봉준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1호안전 : 2015년 3월말기준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 여신한도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전 : 외국환리스크관리 세칙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5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1시
 [안전 통지일 : 2015년 8월 24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구동현	송정환	최윤석	윤봉준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1호안전 : 2015년 6월말기준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의 없음	-
4. 의결안전	의결안전 없음				

(마) 제2015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3시 30분
 [안전 통지일 : 2015년 11월 17일(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구동현	송정환	최윤석	윤봉준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찬성	찬성	-	찬성	-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의결안전 없음)	-	-	-	-	-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조조직

산은캐피탈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종합리스크관리자(리스크관리실장)를 두고 있으며(리스크관리규정 §7), 리스크관리실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합니다.(리스크관리세칙 §12)

종합리스크관리인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동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며, 아울러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업무의 통할, 제반 리스크수준에 대한 주기적 측정 및 평가, 주요 리스크관리정책의 기획 및 이행 점검, 리스크관리시스템 개발 통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리스크관리실
- 직원수 : 총7명
- 담당자 : 실장 1명, 담당직원 6명

9. 경영관리협의회

- 해당사항 없음

10. 리스크관리협의회

- 해당사항 없음

11.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송정환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제4항(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충족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한국산업은행 여신심사2부장 등 역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높은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96%

(2) 사외이사 손재필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제4항(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충족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강남대학교 대우교수, 現 제이제이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높은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100%

(3) 사외이사 김종두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제4항(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충족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現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높은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100%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송정환

(가) 활동내역

송정환 사외이사는 20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0회에 참석(1회는 송정환 사외이사 개인일정으로 인한 불참), 감사위원회 7회 중 7회 참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중 5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96%)

송정환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 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개진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5년 중 총 2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0,270,000원	
기본금	46,970,000원	
상여금	-	
기타 수당	3,300,000원	이사회 등 참가수당 30만원×11회

항목	금액	산출내역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2) 사외이사 손재필

(가) 활동내역

손재필 사외이사는 20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총11회 중 11회 참석, 감사위원회 총7회 중 7회 참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1회 중 1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손재필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 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개진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5년 중 총 1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0,570,000원	
기본금	46,970,000원	
상여금	-	
기타 수당	3,600,000원	이사회 등 참가수당 30만원×12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회	배우자 건강검진 포함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3) 사외이사 김종두

(가) 활동내역

김종두 사외이사는 2015년 중 개최된 참석대상 이사회 총7회 중 7회 참석, 감사위원회

총1회 중 1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김종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 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개진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5년 중 총 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3,543,808원	
	기본금	31,443,808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100,000원	이사회 등 참가수당 30만원×7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회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4) 요약

구 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활동 시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실적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송정환	11	10	7	7	1	1	5	5	23
손재필	11	11	7	7	1	1			19
김종두	7	7	1	1	-	-			8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산은캐피탈은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및 중요 경영정보를 상시 제공하며, 이사회 중 사외이사의 질의사항 피드백을 위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회사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의 취지를 반영한 사외이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제고 및 금융회사와 금융환경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이 가능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1) 가입대상자 : 등기임원(사외이사 포함), 비등기임원(준법감시인 포함)

(2) 보험가입조건

- 보상한도 : 30억원

* 현재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은 없음

- 보험기간 : 1년 (2015. 7. 26 ~ 2016. 7. 25)

- 보험료 : 8.9백만원

- 가입사 : 메리츠화재

- 주요 배상범위

- 경영배상책임
- 피보험회사의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 청구

- 주요 면책·부담보조항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정부기관 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중 (i) 의도적 또는 실제적으로 피보험자가 이익·편의를 불법으로 얻은 사실에 기인된 것이거나 (ii) 부정·사기·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거나, 묵과하거나, 남을 설득시켜 하도록 한 행위에 기인된 경우
- 전문 서비스의 이행, 불이행, 그와 관련된 행위, 과오 또는 태만(부작위)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 회사 임원 또는 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전문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나 오류 및 탈루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 특허권/저작권 관련손해
- 신체상해 및 재물의 손해
- 전쟁/테러행위 관련
- 보험계약 이전 손해배상청구 및 사고정황
- 오염물질 및 원자력 관련 손해
- 피보험자참여 손해배상청구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산은캐피탈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5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향후 근거규정 및 구체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내부평가

산은캐피탈은 현재 내부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여 평가결과가 없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내부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외부평가

현재 산은캐피탈의 사외이사 3명 전원은 모두 2년 미만 재임 중으로서 외부평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후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015년 산은캐피탈 이사회에는 선임사외이사가 별도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산은캐피탈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이사회규정 §2)하고 있으므로, 추후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구분	담당 인원수	업무내역
기획관리본부장	1명	사외이사 지원업무 총괄
기획실	6명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원
검사실	5명	감사위원회 지원
인사지원실	4명	보상위원회(추후 이사회내위원회로 설치 예정) 지원
리스크관리실	7명	리스크관리위원회 지원

* 지원업무 내역

- 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등을 위한 실무지원(경영정보의 보고·제공 등 포함)
- 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위원회 지시사항 이행
- 기타 사외이사의 활동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 지원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장범식	2008.06.26	2011.06.25	36개월	감사위(2008.6월~2011.6월) 사추위(2011.6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송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이상구	2009.03.30	2012.03.29	36개월	감사위(2009.3월~2012.3월) 사추위(2011.6월, 2012.3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세기컨트롤 경영고문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김성훈	2009.12.10	2012.12.09	36개월	감사위(2009.12월~2012.12월) 사추위(2011.6월, 2012.3월, 2012.12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 한나라당 중앙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주운하	2011.06.26	2014.06.25	36개월	감사위(2011.6월~2014.6월) 사추위(2012.3월, 2012.12월, 2014.6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산은캐피탈 대표이사 한국산업은행 이사대우
최정상	2012.03.30	2015.04.29	36개월	감사위(2012.3월~2014.3월) 사추위(2012.12월, 2014.6월, 2014.11월, 2015.4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상임 심판관
안병우	2012.12.10	2014.12.09	24개월	감사위(2012.12월~2014.12월) 사추위(2014.6월, 2014.11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충주대학교 총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
송정환	2014.06.26	2016.06.25	18개월	감사위(2014.6월~) 사추위(2014.11월, 2015.4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감사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여신심사2부장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1실장
손재필	2014.12.10	2016.12.09	13개월	감사위(2014.12월~) 사추위(2015.4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제이제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경기도체육회 이사
김종두	2015.04.30	2017.04.29	8개월	감사위(2015.4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12.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

(1) 주식 발행 현황

산은캐피탈의 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서, 주식 자체에 의결권이 없거나 안전별로 행사 가능한 의결권에 차이가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주식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산은캐피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와 주식의 종류별 발행 수, 자기주식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보통주	종류주식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000	-	300,000,000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11,196,790	-	211,196,790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49,021,324	-	149,021,324
1. 감자	140,021,324	-	140,021,324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9,000,000	-	9,000,000
IV. 발행주식의 총수 (II-III)	62,175,466	-	62,175,466
V. 자기주식수	-	-	-
VI. 유통주식수 (IV-V)	62,175,466	-	62,175,466

(2) 주주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최대주주	보통주	62,124,661	99.92%	62,124,661	99.92%
계		보통주	62,124,661	99.92%	62,124,661	99.92%

(나) 소액주주 및 외국인 주주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단위 : 명, 주, %)

구분	주주		보유주식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838	99.95%	50,805	0.08%
외국인주주	3	0.16%	326	0.00%

(다) 연도 중 주주현황 변동사항(지분을 1% 이상 주주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1)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소집 현황

개최연도	구분	소집결의일	소집공고일	개최일자(요일)	개최장소
2013	제42기 정기주총	2013.03.07	2013.03.07	2013.03.25(월)	산은캐피탈 본점 7층
2014	제43기 정기주총	2014.03.03	2014.03.05	2014.03.21(금)	상동
2014	제44기 임시주총	2014.04.29	2014.05.02	2014.06.26(목)	상동
2014	제44기 임시주총	2014.10.28	2014.10.28	2014.12.10(수)	상동
2015	제44기 정기주총	2015.03.06	2015.03.11	2015.03.27(금)	상동
2015	제45기 임시주총	2015.03.19	2015.03.19	2015.04.30(목) 2015.05.14(목)-계속회	상동

(2)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세부사항

구분	개최일자	소요시간	이사회구성원 참석여부	영문 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요비용(원)
제42기 정기주총	2013.03.25	15분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참석	없음	497,610
제43기 정기주총	2014.03.21	10분	상동	상동	1,105,500
제44기 임시주총	2014.06.26	10분	상동	상동	551,700

구분	개최일자	소요 시간	이사회구성원 참석여부	영문 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요비용(원)
제44기 임시주총	2014.12.10	20분	상동	상동	551,400
제44기 정기주총	2015.03.27	10분	상동	상동	1,103,700
제45기 임시주총	2015.04.30 2015.05.14 -계속회	20분 10분	상동	상동	551,400

(3) 대상 사업연도 중 개최한 주주총회 세부사항

(가)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7 개최)

안건구분	결의 유형	참석 주식수(주)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의안 : 제44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승인	보통 결의	62,124,661 (발행주식 총수의 99.9%)	100%	-	재청 및 동의
제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전영삼)	상동	62,124,661 (발행주식 총수의 99.9%)	100%	-	상동
제3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액 결정(10억원, 전년 동결)	상동	62,124,661 (발행주식 총수의 99.9%)	100%	-	상동

* 의결정족수 : 참석주식수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나) 제45기 임시주주총회 (2015.04.30 개최, 2015.05.14 계속회 개최)

안건구분	결의 유형	참석 주식수(주)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구동현)	보통 결의	62,124,661 (발행주식 총수의 99.9%)	100%	-	재청 및 동의
제2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상근) 선임(김형섭)	상동	62,124,661 (발행주식 총수의 99.9%)	100%	-	상동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김종두)	상동	62,124,661 (발행주식 총수의 99.9%)	100%	-	상동

* 의결정족수 : 참석주식수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 관련규정

(첨부1)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라 한다)라 부른다. 영문명은 KDB CAPITAL CORPOR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의 시설대여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동 조합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
 3.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신용카드업과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등의 부대업무
다만, 신용카드 회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함.
 4. 할부금융
 5. 특정물건의 연불판매
 6.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7. 어음할인
 8.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11.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외벤처캐피탈회사, 국외기관의 투자 대행 및 해외투자 등의 국제업무
 12. 지급보증
 13.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관련 업무(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업무 포함)
 14. 부동산임대
 1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취급이 허용되거나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득한 업무
-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지점,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bc.co.kr>)에 게재한다.
-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천만주 범위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이상 15%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에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적 제휴,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기타 경영상 필요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삭제)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그 권리행사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5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보통주식은 2,500억원을 한도로 우선주식은 500억원을 한도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보통주식은 1,500억원을 한도로 우선주식은 500억원을 한도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주주는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 ②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려는 주주는 그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 및 주식의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삭제)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제31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회사 경영 및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총 재임기간은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증원 또는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제33조의 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임기를 결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대표이사 등)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1인을 둔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임원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사장, 부사장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개시 24시간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결의사항)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1조의2(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②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40조 및 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총위원 중 사외이사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1조의5(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6(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 퇴직금에 관한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43조(운영위원회)

① 이 회사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비등기임원

제44조(비등기임원)

이 회사는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 해임, 임기, 직무, 보수 및 퇴직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계산

제45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주주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게 지급한다.

제48조의2(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9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③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제2조(조례 및 규정) 본 회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기구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비등기 상근임원은 본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2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 2,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2,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의 4 제4항과 관련하여 현 상근감사는 임기만료시까지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부칙(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기관 사전협의) 제2조 제3호의 단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부칙(1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5조에 의한 사업년도 변경 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제33조 제1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정관 시행이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33조를 적용한다.

부칙(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2)

이사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 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사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 따라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소집)

- ① 이사회 소집은 사장이 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 심의안건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6호중 외규의 변경에 따른 자동적 변경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1)(2)(3)(6)(7)(8)(9)

(10)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예산의 편성 및 변경
- 3. 결산의 승인
- 4. 자본금의 변경(적립금의 자본전입 포함)
- 5.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승인(주요리스크관리지표, 연간리스크한도 포함)
- 6. 다음의 중요규정 제정 및 변경
 - 가. 이사회 규정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라. 운영위원회 규정
 - 마. 비등기임원규정
 - 바. 내부통제규정
 - 사. 준법감시인운영규정
 - 아. 리스크관리규정
 - 자. 내부회계관리규정
 - 차. 직제규정
 - 카. 취업규칙

- 타. 급여규정
- 파. 복지규정
- 하. 퇴직금규정
- 거. 자금세탁방지규정
- 너. 고객정보 등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더. 예산규정
- 러. 회계규정
- 머. 윤리행동강령

- 7. 자회사의 신설, 폐쇄 및 매각과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 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 9.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10. 기타 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삭제)(9)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그 일부분을 운영 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삭제)(9)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토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의사록)

① 이사회업무 소관실장은 의사록의 작성·보관 등 이사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4)(5)

②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보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정관 제41조의 2 및 제41조의 3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4)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상근이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상근이사로 한다.
- ③ 위원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소집 및 기능)

- ① 위원장은 회의 개시 24시간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4)
-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 개최전에 의결로써 사외이사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청한다.(3)

제4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결원시 조치사항)

위원의 사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가 제2조 1항의 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전에 이사회 의결로써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4)

제6조(의사록)

- ① 위원회업무 소관실장은 의사록의 작성보관등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1)(2)
- ② 의사록에는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보존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에 따른다.(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4)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4)(5)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을 말함. 이하 같음) 선임에 대한 승인
4.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내부·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6.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감독기관의 의뢰, 사장, 위원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5)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확인서, 의견서, 답변서 등의 제출요구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회사 거래처에 대한 자료 징구
6. 자회사(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감사 업무에 수반되는 권한
7.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실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4)

제7조(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9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위원 중 1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6)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해임 및 충원)

- ① 위원은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5)

제12조(보조조직)

-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 ② 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실을 둔다.(5)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검사실장이 한다.(4)

제14조(권한위임)

- ① 감사위원의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 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 상근감사위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실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4)
- ③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 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15조(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6조(소집절차)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상근감사위원은 의결사항이 토의를 요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은 상근감사위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7조(의안심의)

- ① 감사위원회는 검사실장이 의안을 낭독한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각 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4)

②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제1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6)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4)(5)(6)

1.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2) 회계 관련 감사보고서(상법에 규정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감사에 관한 사항

- 1)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 2) 정직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및 중대한 변상사항(내부 감사 결과)
- 3) 감사실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4)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승인
- 5) (삭제)
- 6) (삭제)
- 7) 내부·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연 1회)

라. 기타

-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2)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4)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5)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6)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7)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8)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9) 외부감독기관 또는 지주회사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
- 11)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나. 기타

- 1)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계인의 출석)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회계관련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5)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중요한 의결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상근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회에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5)(6)
 1. 위원회가 정한 내부감사계획의 세부계획변경
 2. 내부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자회사의 조사
 4. 제4조 각호의 권한
 5. 감봉이하에 해당하는 징계 및 개인별 일천만원 이하의 변상사항(내부 감사 결과)

6. 일상감사
7.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
8.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
9. 내부·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및 확인
10. 감사관련 대외보고 및 검사실에 대한 지휘·감독
11.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12.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검사실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5)

제23조(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근감사위원은 제22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②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